

##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공고

문산읍 문산리 17-92번지 일원 상의 문산통일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, 「주택법」 제11조(주택조합의 설립 등)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. 9. 26.

### 파 주 시 장

#### □ 변경인가 사항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
조합의 명칭	문산통일지역주택조합	좌 동
사무소의 소재지	문산읍 문산로26번길 13, 273호	좌 동
조합설립 인가일	2017. 9. 5.	좌 동
주택건설대지 위치	문산읍 문산리 17-92번지 일원	좌 동
조합원 수	186명	<b>183명</b>
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면적과 비율	12,252㎡ 중 10,399㎡(84.8%)	좌 동
변경내용	제명, 탈퇴 및 층원 등에 따른 조합원 수 변경 (186명 → 183명)	

끝.